

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인 천 광 역 시 장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400억원)

사업명	지원규모	협약기관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1조 원	-	은행협조 용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9,100억원	16개 협약은행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4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기계·공장확보자금	370억원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 그룹(기준대출금리, 변동)
벤처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I그룹(기준대출금리-0.5%p, 변동)
재해기업자금	30억원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V그룹(무이자용자, 고정)

구조고도화 자금

IV. 기금용자(400억원)

1. 지원개요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체당 용자한도	용 자 기 간		대출금리
370억원	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이 내)	기 본	일반	1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I)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3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 (V)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이 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이 내)	공장	3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I)
			연구소	1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이 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창업자 금 (업체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p (II)	
	운전자금		3억 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0억원	재해 자금	재해기업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IV)

2.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2년 1분기 대출금리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3%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8%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
V 그룹	특별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4%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IV그룹 무이자 제외)

3. 기타조건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4.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7.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032)0621~0624

3 재해기업 자금

① 지원목적

-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② 지원규모 : 3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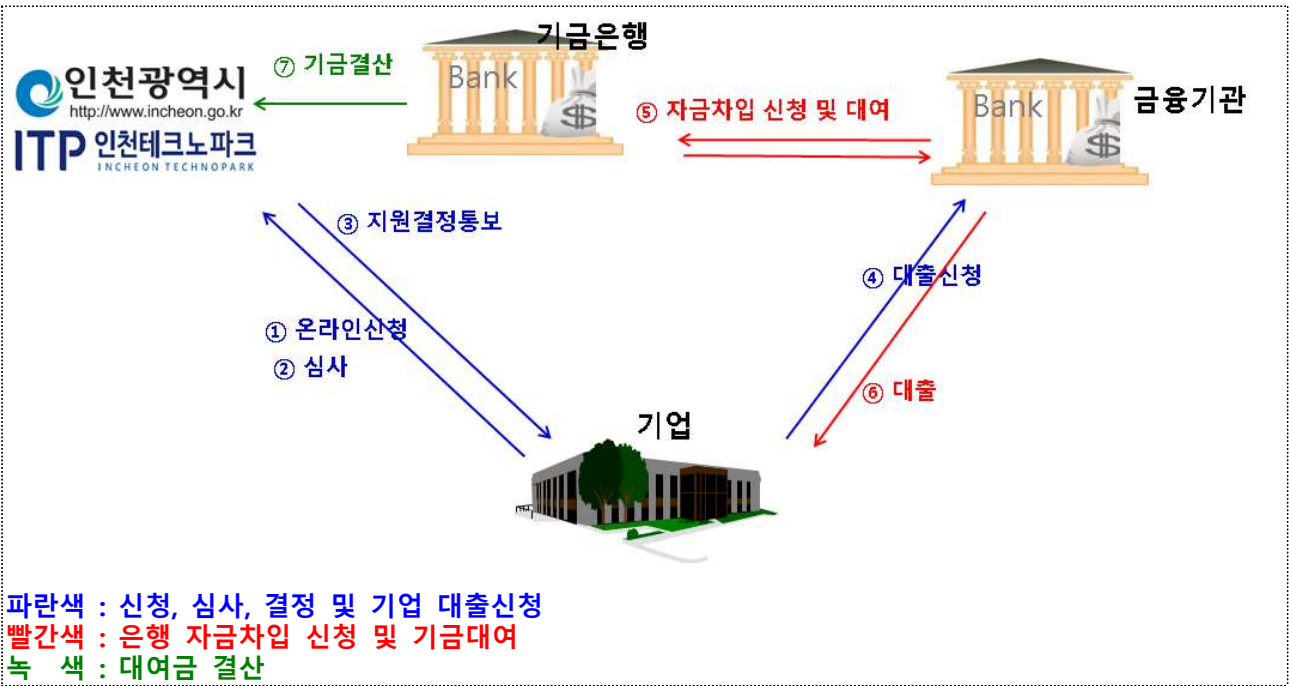
③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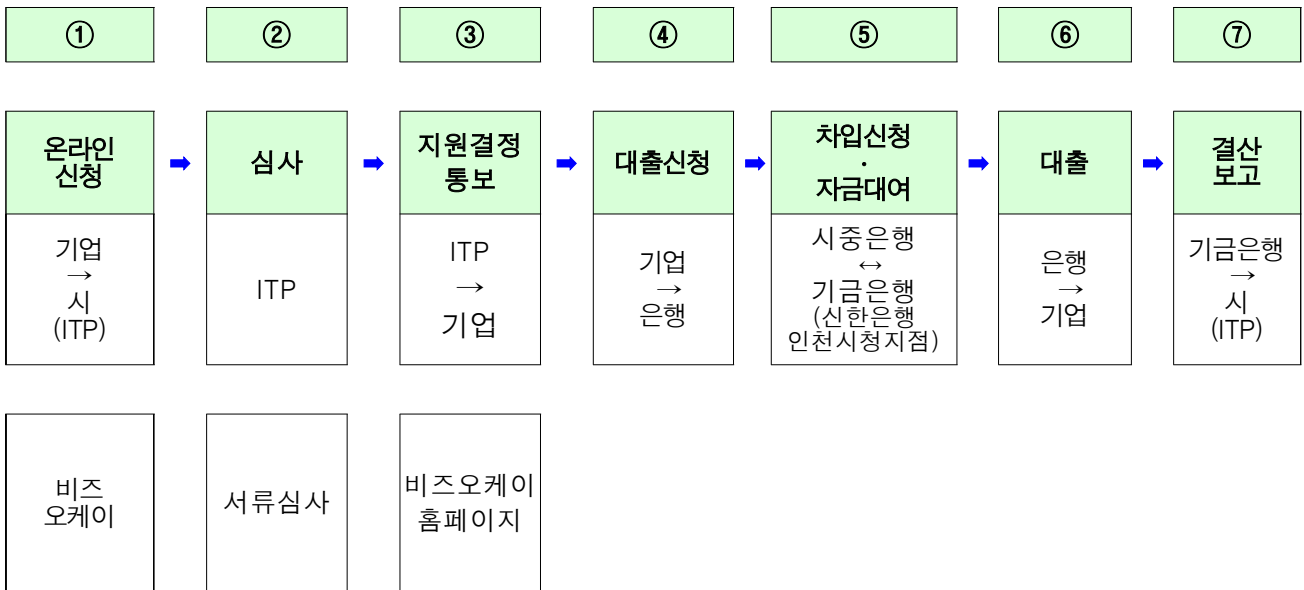
<지원 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4 지원체계



5 업무절차



6 심사방법

- 업종, 지원요건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가능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업체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의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피해금액 이내 지원
- 업체당 2억원 한도 이내

7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 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부대시설(창고)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용도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피해금액 증빙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화재, 폭발	화재증명원 등	소방서 발급